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811
----------	------

제안일자 : 2021. 12. 17.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수정이유

- 시기조정 심의대상 구역 선정에 있어 기존에 시기조정을 받은 구역의 이주실행이 조정 받은 내용대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 보완.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9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통합하여 제3호 가목 및 나목으로 정리하고,
- 같은 항 제5호는 삭제하며,
- 제302회 임시회에서 개정되었으나 잘못 반영된 사항을 정정한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제6항 중 “정비사업클린업시스템”을 “정비사업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중 “정 비계획용적률을 뺀”, “추 진하기 어렵다고”를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추진하기 어렵다고”로 한다.

안 제30조제4항 중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을 “법 제101조의6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로 한다.

안 제49조제1항 제3호 중 “(해당구역의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완료된 구역으로 한정한다)”를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으로 하고, 제3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해당구역의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구역
- 나. 조정대상구역 중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

안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삭제한다.

상한초과용적률에
서 정비계획용적률
을 뺀 용적률의 10
0분의 50을 말한
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
을 추진하기 어렵다
고 인정된 경우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
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④ 법 제101조의6 제
2항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은 법적상한초과용
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
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
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
원회 심의를 거쳐 1

상한초과용적률에
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

- 추진하기 어렵다고

④

-- 법 제101조의6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

---- 추진하기 어렵
다고

<p>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p>	<p>----- ----- -- <u><신 설></u></p>	<p><u>가. 해당구역의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구역</u> <u>나. 조정대상구역 중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u></p>
<p><u><신 설></u></p>	<p><u><신 설></u></p> <p>4. <u>기 시기조정 구역 중 이주계획이 변경된 경우</u></p>	<p><u><삭 제></u></p>
<p><u><신 설></u></p>	<p>5. <u>그밖에 주택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장이나 구청장이 인가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u><삭 제></u></p>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정비사업클린업시스템”을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중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추진하기 어렵다”를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추진하기 어렵다”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을 “법 제101조의6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로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해당구역의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완료된 구역으로 한정한다)”를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으로 하고, 제3호가 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해당구역의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구역
- 나. 조정대상구역 중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⑥ 구청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제4항제3호 및 제5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제69조제1항에 따른 <u>정비사업클린업시스템</u>(이하 “<u>종합정보관리시스템</u>”이라 한다) 및 구보에 공고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u>이해관계자</u>”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5조----- ----- ----- ----- ----- ----- ----- <u>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u>----- ----- ----- ----- ----- ----- -----.</p>
<p>제30조 ③ 법 제101조의5 제2항에 따른 “<u>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u>”은 <u>법적상한초과용적률</u>에서 <u>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u>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u>추진하기 어렵다고</u>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p>	<p>제30조 ③ ----- ----- ----- ----- <u>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u>----- ----- ----- <u>추진하기 어렵다고</u> ----- ----- ----- -----.</p>
<p>④ 법 제101조의6 제2항에 따른 “<u>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u>”은</p>	<p>④ ----- -----</p>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49조(시기조정사유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심의대상구역”이라 한다)를 말한다.

- 1.·2. (생략)
3.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500호를 초과하고, 같은 법정동에 있는 1개 이상의 다른 정비구역(해당구역의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완료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기존 주택 수를 더한 합계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법 제101조의6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

추진하기 어렵다고 -----

제49조(시기조정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 1.·2. (현행과 같음)

3. -----

-----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

가.해당구역의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처

분계확인가를 신청하였거나,
관리처분계확인가를 받은 구역
나.조정대상구역 중 이주가 완료되
지 않은 구역